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전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송수행자로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소속 공무원의 소송수행에 있어 책임감을 도모함(안 제1조 및 제2조)
- 포상금 지급금액 개정(안 제5조)
 - 본안사건(행정·민사)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를 “1건당 600,000원 이내”로 개정
 -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를 “1건당 200,000원 이내”로 개정
 - 신청사건(행정·민사)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를 “1건당 100,000원 이내”로 개정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업무 중 당면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 1조 및 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 수행자 및 소송에 따르는 관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 민사 소송의 본안사건은 “1인당 100,000원 이내” 에서 “1건당 600,000원 이내” 로, 민사 소액사건 심판은 “1인당 20,000원 이내” 에서 “1건당 200,000원 이내” 로, 행정, 민사 소송의 신청사건은 “1인당 20,000원 이내” 에서 “1건당 100,000원 이내” 로 현실화 하여 조정하였음.

○ 검토결과

- 업무관련 소송사건의 증가로 인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책임감 도모를 위해 수행자 포상금의 현실화 상향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